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

○ 폐지이유

地方自治法(법률 제4,464호 '91.12.31)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區議會에 常任委員會가 설치되므로 우리區議會에 提出되는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재정하고 本規定을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附 則

이 規定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이 改正 公布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1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와 동법 第82條 및 第84條의 規定에 의거 常任委員會 설치와 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을 改正하여 相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第2條, 第3條 및 第45條)
- 議員의 의석은 議長이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정함. (第3條)
- 의사일정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議長이 결정 (第15條)
- 議長은 提出된 의안을 本會議에 報告하고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후 本會議에 부여함. (第19條)
- 委員會에서 提出한 의안은 그 委員會에서 회부하지 아니함. (第19條의 4)
- 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음. (第55條의 2)
- 豫算案 審査와 決算의 審査는 所管委員

會에서 예비심의 및 審査를 하고 議長에게 報告함. (第60條 및 第64條)

○ 관련법규

地方自治法 第50條와 第82條 및 第84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規則은 地方自治法 第63條 등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登錄) 議會委員(이하 “議員”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議會 事務局長에게 제시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第3條(의석배정) ①議員이 의석은 議長이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議長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議長이 選出되기 전의 의석은 事務局長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第4條(開會式) 議會는 집회일에 開會式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議長과 副議長의 선거후에 開會式을 행한다.

第5條(宣誓) 議員은 임기초에 議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本 議員은 法令을 준수하고 麻浦區民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區政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議員의 職務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麻浦區 區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2章 議長과 副議長

第6條(議長·副議長의 選舉) ①議長과 副議長은 議會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第1項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第1項의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第2項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議長과 副議長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議長의 選舉가 끝난 후 副議長을 選舉한다.

第7條(議長·副議長의 任期) ①議長選舉일이 副議長選舉일보다 먼저인 경우 副議長의 任期는 議長의 任期와 같이 종료된다.

②議員 총선거후 선출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議長 또는 副議長은 다음 회기에서 議長 또는 副議長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第8條(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議長·副議長의 選舉에 준한다.

第9條(副議長의 의장직부대리) 議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副議長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10條(議長·副議長의 사임) ①議長과 副議長은 議會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第3章 會議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등

第11條(개의) 本會議는 議會의 議決 또는 議長이 議會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第12條(휴회) ①會議는 議決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麻浦區廳長(이하 “區廳長”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議長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

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第13條(회기) ①會議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議決로 연장할 수 있다.

②會議에 부의된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第14條(會議에 관한 선포) ①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議長이 선포한다.

②議長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地方自治法(이하 “法”이라 한다)第55條第1項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會議중 第2項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산회를 宣布한다.

④議長이 개의를 宣布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宣布한 후에는 議事에 관한 發言을 할 수 없다.

第15條(의사일정) 議長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運營委員會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議長이 이를 결정한다.

③議長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의 일시만을 議員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第16條(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議員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第17條(의사일정의 미료안건) 議長은 의사일정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를 열지 못하였거나 會議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의안 및 동의

第18條(의안의 제출·발의) 議會에서 의결한 의안은 區廳長이나 委員會 또는 議員이 提出, 提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議員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委員會의 제출의안은 그 所管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第19條(常任委員會 회부) ①議長은 의안이 발의 또는 提出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議員에게 배부하고 本會議에 報告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本會議 報告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결정한다.

第19條의2(特別委員會 회부) ①議員의 동의를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 特別委員會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特別委員會에 회부된 案件과 관련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19條의3(심사기간) ①議長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로 회부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부의할 수 있다.

第19條의4(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에서 提出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서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19條의5(재회부) 本會議는 委員長의 審査報告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決로 다시 그 案件을 같은 委員會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19條의6(委員會의 제안) ①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條例案등 기타의안을 提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의안은 委員長이 제출자가 된다.

第20條(동의의 의제 성립) 이 規則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第21條(수정동의) ①疑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바로 本會議의 의제가 된다.

③委員會는 소관사항 외의 案件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委員會에서 그 안을 審査하는 동안에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회부한다.

第22條(의안·동의의 철회) ①議員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本會議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委員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區廳長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의제가 된 區廳長 提出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23條(번안) 번안동의는 本會議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議員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찬성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委員會에 있어서는 委員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있어서는 案件이 區廳長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委員會에 있어서는 本會議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第24條(안전심의) ①本會議는 案件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審査한 委員長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否決 하되 議決로 質疑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제안자가 區廳長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說明하게 할 수 있다.

③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件 이상의 案件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第25條(의안의 정리) 本會議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축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議長 또는 委員會에 위임할 수 있다.

第26條(의안의 이송) 議長은 議會에서 議決된 의안중 區廳長에게 이송하여야 할 의안은 이를 지체없이 區廳長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절 發 言

第27條(발언의 허가) ①議員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통지한 議員의 발언이 끝난 후 다음 議長의 許可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議長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議長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議長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第28條(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討論 또는 議長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議長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議員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第29條(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議員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가 개시되면 議長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第30條(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지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長은 議員의 발언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員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第31條(발언회수 제한) 議員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質疑에 대하여 答辯하거나 委員長, 發議者,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說明 할때와 議長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2條(발언시간의 제한) ①議員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質疑·補充發言·議事進行發言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議員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게재할 수 있다.

第33條(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報告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第34條(討論의 通知) ①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議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第35條(議長의 討論參加) ①議長이 討論에 참가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②第1項에 의해 議長이 議長席에서 물러날 때에는 副議長이 議長을 대리한다.

第36條(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①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②議員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議會의 議決로 議長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宣布할 수 있다. 다만, 質疑나 討論에 참가한 議員은 그 終結을 동의할 수 없다.

③第2項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4 절 表 決

第37條(表決의 宣布)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제목을 宣布하여야 한다.

②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第38條(表決의 參加) 表決할 때에는 會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第39條(의사변경의 금지) 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표시한 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第40條(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議長의 제의 또는 議員의 동의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議長은 案件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방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④會議에서 실시하는 각종 選舉는 법령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第41條(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議員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委員의 참여하에 무·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委員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第42條(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議

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提出된 수정안으로부터 먼저 표결한다.

2. 議員의 수정안은 委員會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議員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第43條(표결 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宣布한다.

제 5 절 會議錄

第44條(會議錄의 작성) ①會議은 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第45條(會議錄의 서명과 보존) ①會議錄에는 議長·議長을 대리한 副議長·臨時議長과 會議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議員 및 事務局長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議員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會議錄은 會議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第46條(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議員과 公務員 기타 발언자는 會議錄

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議員이 會議錄에 기재한 사항과 會議錄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本會議의 議決로 이를 결정한다.

第47條(會議錄의 배부 및 공개) ①會議錄은 議員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議長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議員이 第1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會議錄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議長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받은 議員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되지 아니한 會議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 또는 議長의 결정으로 第1項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會議錄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會議錄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會議錄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議會에서 따로 정한다.

제 4 장 委員會

第48條(議事日程과 開會日時)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は 委員長이 幹事와 협의하여 정한다.

第49條(本會議중 委員會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會議 중에는 開會할 수 없다. 다만, 本會議의 의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한 運營委員會 開催는

예외로 한다.

第50條(委員會에서 동의) 委員會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第51條(委員會의 審査) ①委員會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討論 및 査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査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審査하는 案件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條例案에 대하여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第1項의 제안자가 區廳長일 경우나 第2項의 경우 설명의 충실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說明하게 할 수 있다.

第52條(委員의 發言) ①委員은 委員會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委員은 委員會에서 質疑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第53條(委員아닌 議員의 발언 청취)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아닌 議員 발언을 들을 수 있다.

第54條(委員會의 議事·의결정족수) ①委員會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委員長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第55條(공청회) ①委員會는 중요한 案件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案件을 심사하기 위하여 議決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委員會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委員會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委員會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會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第55條의2(연석회의) ①委員會는 다른 委員會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委員會의 委員長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案件명과 이유를 書面으로 명시하여 다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第56條(심사보고서의 제출) ①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書面으로 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報告書가 提出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議員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第57條(委員長의 報告) ①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심사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委員會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本會議에 報告한다.

②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報告 또는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長이 第1項의 報告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第58條(委員會 會議錄) ①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서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委員會의 의결이 있거나 委員長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委員會 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대리한 幹事가 서명·날인한다.

第59條(비공개 會議錄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비공개 會議錄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議會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 5 장 豫算案과 決算審査

第60條(豫算案 審議) ①議會에 豫算案이 提出된 때에는 區廳長으로부터 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議長은 이를 所管別 常任委員會에 회부하고 所管別 常任委員會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議長에게 報告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本會議에 부의한다.

③議長은 豫算案을 所管別 常任委員會에 회부할 때에는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所管別 常任委員會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第61條(豫算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審査를 거친 豫算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第62條(豫算案의 議決) ①豫算案의 審査報告

가 있는 때에는 豫算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豫算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總額에 대하여 의결한다.

第63條(豫算案의 재심요구) 豫決委員會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議會의 議決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第64條(決算의 審査) ①議會에 決算이 提出된 때에는 議長은 이를 所管別 常任委員會에 회부하고 所管別 常任委員會는 예비심사 결과를 議長에게 報告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報告書를 첨부하여 이를 豫決委員會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후 그 결과를 本會議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議長이 결산을 所管別 常任委員會에 회부할 때에는 第60條第3項을 준용한다.

제 6 장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答辯

第65條(區廳長등의 출석요구) ①本會議는 그 議決로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그 議決로 議長을 경유하여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出席答辯 하여야 하며, 區廳長이 出席要求를 받은 경우 出席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答辯의 충실을 위하여 關係公務員의 出席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議長에게 사전 제출한 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代理出席, 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區廳長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第66條(區廳長에 대한 書面質問) ①議員이 區廳長에게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質問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議長은 지체없이 이를 區廳長에게 이송한다.

②區廳長은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書面으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答辯할 수 있는 기한을 書面으로 議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答辯에 대하여 보충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 있다.

第67條(區廳長등의 발언) 區廳長 또는 關係公務員이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 또는 委員長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議員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第68條(議員의 청가 및 결석) ①議員이 사고로 인하여 議會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타 議員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議會에서 따로 정한다.

第69條(議員의 사직) ①議員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議長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議員은 提出한 辭職書에 대하여 議會의 議決 또는 議長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第70條(청구서의 委員會 회부와 答辯書 提出) ①議長은 法 第71條의 規定에 의거 議員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特別委員會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提出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答辯書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第71條(답변서의 委員會 審査등) ①議長이 答辯書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정계자격특별위원회는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提出한다. 이때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第72條(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第8章 秩序

第73條(경호) ①議長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運営委員會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議會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議長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찰관은 議長의 지휘를 받아 會議場 밖에서 경호한다.

③기타 議會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議會에서 따로 정한다.

第74條(會議의 秩序維持) ①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외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깃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배되는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당일의 會議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會議을 중지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75條(議長의 재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議員) 會議場안에서 議長의 경고·재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議員은 정계대상자로서 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本會議에 부의할 수 있다.

第76條(會議場 出入의 制限) 會議場안에는 議員, 關係公務員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者和 議長이 허가한 者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第77條(傍聽) ①議長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議會에서 따로 정한다.

第78條(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議會에 登錄된 기자에 한하여 會議場 안(本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本會議 및 委員會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에 대하여는 議會에서 따로 정한다.

第9章 懲戒

第79條(懲戒의 요구와 회부) ①議長은 第78

條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報告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委員長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報告한다, 이 경우 第7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本會議에 報告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議員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法 第75條의 規定에 의거 모욕을 당한 議員이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請求書를 議長에게 提出한다.

④第3項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報告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第1항,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議長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本會議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第80條(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第79條第1項과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징계회부는 議長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委員長의 報告를 받은 날 또는 동조 第3項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同條第5項의 本會議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1條(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會議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第82條(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議長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關係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議員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할 수 없으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第83條(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議長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本會議에 부의하여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宣布한다.

第10章 補 則

第84條(기간의 기산일) 이 規則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第85條(규정등 제정) 의회는 이 規則외에 다른 法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に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附 則

①(시행일)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경과조치) 이 規則 시행당시의 麻浦區議會 會議에 관한 사항은 이 規則에 의한 것으로 본다.